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 수사의 방법과 절차, 통제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안 제5의2 신설)
- 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 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 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 라.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 마.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 1 -

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대통령령 제 호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디지털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준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수사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부인하거나 가상의 신분을 알리고(다만,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과 대화에 참여하거나 계약·거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이하 “상급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가 긴급을 요하여 서면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승인을 받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방법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 단위이면 첫 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다.

1. 피혐의자 검거 등 신분비공개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피혐의자 소재불명 등 신분비공개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신분위장수사 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한다)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은 경우
5. 상급 수사부서의 장이 승인을 철회한 경우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4항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시, 종료사유 등을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신분위장수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 신분위장수사가 종료된 경우

②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개시 또는 중지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신청서에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신분비공개수사의 통제)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사건요지 및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만 한다)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승인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비밀유지의무) 법 제25조의7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수행한 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의 인적사항
2.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신분
3. 공개 또는 누설할 경우 계속적 활용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기법
4. 그 밖에 공개 또는 누설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디지털성범죄의 수사 특	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준수사	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
		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	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u><신 설></u>		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	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수사	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	사해야 한다.	
<u><신 설></u>		②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	관리가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부인하거나 가상의 신분을 알리	고(다만, 법 제25조의2제2항제1	호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를 말
<u><신 설></u>		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과 대화	

<신 설>

에 참여하거나 계약·거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이하 “상급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가 긴급을 요하여 서면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승인을 받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방법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수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 단위이면 첫 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신 설>

여야 한다.

제5조의5(신분위장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신분위장수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 신분위장수사가 종료된 경우

②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개시 또는 중지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신청서에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제5조의6(신분비공개수사의 통제)

<신 설>

1일로 산정하고, 월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다.

1. 피혐의자 검거 등 신분비공개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피혐의자 소재불명 등 신분비공개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신분위장수사 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한다)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은 경우
5. 상급 수사부서의 장이 승인을 철회한 경우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4항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시, 종료사유 등을 상급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신 설>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사건요지 및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승인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7(비밀유지의무) 법 제25조의7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수행한 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의 인적사항
2.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신분
3. 공개 또는 누설할 경우 계속적 활용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기법
4. 그 밖에 공개 또는 누설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2100-6405